

의안번호	제 848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10월 1일

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

의안 번호	848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0월 0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폭력,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(피해장애인)을 임시보호하여 2차적 피해를 예방 하고 심리치료·사회복귀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
- 「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(안)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
- 위 치 : 충북 도내(비공개 시설)
- 시설현황 : 건물(주택) 1층 97.05㎡, 2층 66.95㎡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- 수탁기관 :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·법인
- 위탁방법 : 재위탁
- 예 산 액 : 336,656천원(국비 72,700, 도비 263,956)
- 위탁사무
 -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·보호
 -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
 -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·권익옹호 지원
 -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
 -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, 자립지원 등

※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(별첨)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336,656천원(국비 72,700, 도비 263,956)

* '21년 기준, 연도별 변동가능

인건비(248,284천원)	운영비(88,372천원)
· 센터장 : 53,354천원 ×1명 = 53,354천원	· 업무추진비 = 1,020천원
· 생활재활교사 1 : 35,435천원 ×1명 = 35,435천원	· 여비 = 1,000천원
· 생활재활교사 2 : 33,664천원 ×1명 = 33,664천원	· 수용비및수수료 = 10,363천원
· 생활재활교사 3 : 32,834천원 ×1명 = 32,834천원	· 공공요금 = 6,720천원
· 생활재활교사 4 : 31,050천원 ×1명 = 31,050천원	· 제세공과금 = 1,250천원
· 조리원 : 21,870천원 ×1명 = 21,870천원	· 차량비 = 8,787천원
· 퇴직적립금 = 17,181천원	· 시설비 = 21,778천원
·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= 22,896천원	· 자산취득비 = 750천원
	· 생계비 = 23,100천원
	· 수용기관경비 = 1,200천원
	· 피복비 = 2,160천원
	· 의료비 = 1,400천원
	· 교육비 = 600천원
	· 사업비 = 8,244천원

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: 붙임

○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: 붙임

○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: 관계법령 붙임

3. 관계법령 : 붙임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

○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4 (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기준)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○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21조의 2 (시설의 위탁)

○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8조(위탁기간)

○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- 제 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제 6조 (수탁기관의 선정)

- 제 7조 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

- 제10조 (재계약·재위탁)

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I. 추진근거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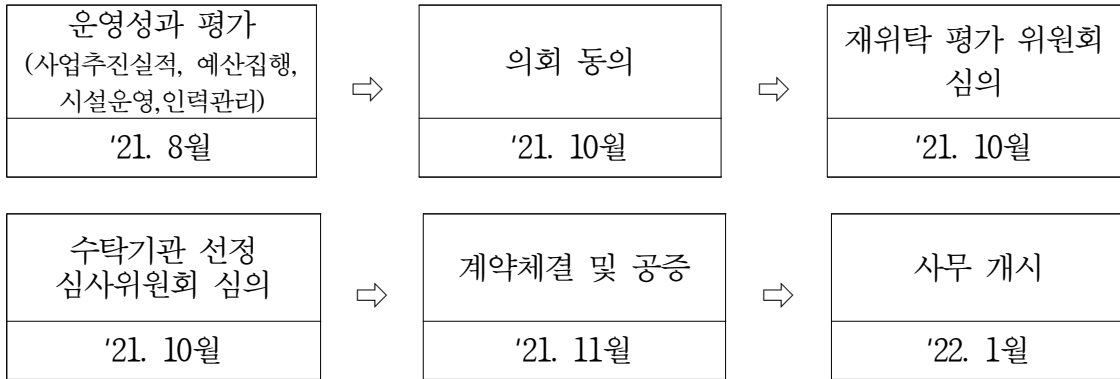
II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 운영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※ (최초위탁) 2019. 10. 2. ~ 2021. 12. 31. (2년 3개월)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
※ (現 위탁기관) 충북장애인부모연대(대표 민용순)
- 위탁기간 :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·법인
- 예산액 : 336,656천원(국비 72,700, 도비 263,956)
- 위탁사무
 -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·보호로 2차적 피해 예방
 -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
 -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·권익옹호 지원
 -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
 -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, 자립지원 등

〈 現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위탁현황 〉

- 위탁기간 : 2019. 10. 2. ~ 2021. 12. 31.(2년3개월) ※ 최초위탁
- 시설규모 : 건물(주택) 1층 97.05㎡, 2층 66.95㎡(충주시 소재)
- 수탁자 : (사)충북장애인부모연대(대표 : 민용순)
- 위탁비 : 336,656천원(인건비 248,284, 운영비 88,372 / '21년)
※ 예산현황 국비 72,700천원, 도비 263,956천원
- 인력운영 : 6명(센터장 1, 생활재활교사 4(2명씩 교대근무), 조리원 1)

Ⅲ. 추진일정



Ⅳ. 세부 추진계획

□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심의

- 법적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, 제7조
- 구성인원 : 6~9명 이내(당연직 2, 위촉직 7)
- 자격요건 : 도 소속공무원, 해당분야 전문가
- 심의내용 :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수탁법인(단체) 심의
 - ※ 재위탁 평가 심사위원회 병행 개최
 - ※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계획 등은 별도 방침 수립 예정

□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

- 협약내용
 - 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
 - 위탁운영 권리 양도 불가, 시설물 구조와 용도 임의변경 금지 등
- 공증시기 : '21.11.

Ⅳ. 향후계획

- 충북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 : '21.10.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: '21.10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: '21.11.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충청북도 피해장애인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

□ 추진근거
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, 제4조의2

□ 민간위탁 현황

- 위탁사무 :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
- 위탁기관 :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·법인
- 위탁방법 : 재위탁
- 시설규모 : 건물(주택) 1층 97.05㎡, 2층 66.95㎡
- 위탁기간 : 2022. 1. 1. ~ 2026. 12. 31. (5년)
※ (최초위탁) '19.10.2~'21.12.31. (2년 3개월)
- 예 산 액 : 336,656천원(국비 72,700, 도비 263,956)

〈 충북 피해장애인쉼터 주요기능 〉

1.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·보호
2. 피해장애인 숙식 및 일상생활훈련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
3. 피해장애인 상담 및 법률·권익옹호 지원
4.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
5.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, 자립지원 등
6. 기타 피해장애인 보호 및 사회복귀 방안에 관한 사항 등

□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견	비 고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 피해장애인 쉼터는 폭력, 학대 등 피해를 입은 장애인(피해장애인)을 임시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'공공성'과 '공익성'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'19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 ○ 피해장애인 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(법인)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	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위해 장애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(법인)에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	
③ 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시설물(체험홈) 기능전환(쉼터)을 추진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음 	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애인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단체 활성화 제고 	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 하여 목표 대비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	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</p>	
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,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협력과 쉼터로서의 기능 확대 예상 	

□ 검토결과 : 적정

-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 13 (피해장애인 쉼터) 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,
 -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(권익옹호기관 등)과 피해장애인쉼터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'공공성'과 '공익성'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,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으로 '19년 우리도가 설립한 기관임
 - 도내 장애인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, 피해장애인 긴급 분리 및 보호를 통한 건강관리지원·사회복귀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고, 건물(주택) 1, 2층의 남·여 구분 가능한 시설의 편리성 으로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음
- ⇒ 공공적 성격이 명확하고,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제출·심의 : '21.10.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공고 : '21.10.
- 위·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: '21.11.

1 관련규정

-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3(피해장애인 쉼터)
-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7(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)

2 추진상황

- 2019.06.05.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공모 선정
- 2019.06.13. 도의회 쉼터 설치·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보고
- 2019.08.13. 피해장애인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※ '21.8.13.~26
- 2019.09.19.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- 2019.10.02. 위·수탁협약 체결 ※ '19.10.2.~'21.12.31
- 2019.12.20. 피해장애인쉼터 개소

3 운영현황

- 수탁기관 : (사단)장애인부모연대
- 위 치 : 충주소재(비공개 시설)
- 입소정원 : 8명(주 7일, 24시간 운영 / 입소기간 최대 3개월)
- 시설인력 : 6명(시설장 1, 생활지도원 4, 조리사 1)
- 시설규모 : 2층 주택(1층 97.05㎡, 2층 66.95㎡)
- 입·퇴소 절차
 - (입소) 도, 시·군 입소 필요성 및 적격여부 판단 후 쉼터에 의뢰
 - (퇴소) 입소기간 만료 및 입소자 퇴소 희망, 이송 등 사유 발생 시
- 사업내용
 - (임시보호)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시 긴급 분리·보호
 - (숙식제공)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
 - (의료지원)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
 - (사회복귀) 일상생활 훈련, 사회참여 활동, 직업재활 훈련

4 예산지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총사업비	국 비	지 방 비		
			계	도비 (국비매칭)	도비 (추가지원)
합 계	796,456	175,400	621,056	175,400	445,656
2019년	150,000	30,000	120,000	30,000	90,000
2020년	309,800	72,700	237,100	72,700	164,400
2021년	336,656	72,700	263,956	72,700	191,256

5 운영성과 ✓ 2019.12.20.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

(기간/단위: '20.1.1,~ '21.6.30. /건)

연번	사업명	주 요 내 용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율(%)
1	거주지원 사업	개인별 맞춤 일상생활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, 사회 복귀 시 자립 여건 마련	9,620	8,780	91.1%
2	법률 및 권익옹호사업	경찰조사, 소송등의 법률지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등을 통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회 복이 될 수 있도록 함	90	75	83.3%
3	상담지원사업	주 호소 문제와 욕구 파악 통한 심리안정에 기여하고 불안과 두려움 완화를 위한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	432	378	87.5%
4	직업재활 지원사업	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 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, 성취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이용인에게 맞는 직업배치 목적	30	9	30.0%
5	자립지원 및 사후관리	사후관리를 통해 자립 및 지역 사회 장애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심리적 안정감 증진	115	117	101.7%
6	사회참여 지원사업	개인별 맞춤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여가,문화생활에 대한 참여기회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	372	298	80.1%
7	지역사회 연계사업	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직업재활, 의료, 교육 지원연계	40	35	97.5%

⑥ **우리도 성과평가 결과(82점)** ✓ (평가기간) '20.1.1~'21.6.30

○ 사업추진실적 : 55점

구분	사 업 추 진 실 적						
	거주지원 사업	법률 및 권익옹호 사업	상담지원 사업	직업재활 서비스 지원사업	자 립 및 사후관리	사회참여 지원사업	지역사회 연계사업
배점기준	10	10	10	10	10	10	10
평가점수	10	7	7	4	10	7	10

○ 예산집행, 시설운영, 인력관리 추진실적 : 27점

구분	예산집행실적	시설운영	인력관리
배점기준	10	10	10
평가점수	7	10	10

□ **타 시도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** ✓ 전국 19개소 설치·운영

시도	개소	종사자수	예산액(천원)			비고
			계	국비	시도비	
계	19	82	4,565,155	1,235,972.7	3,256,550	
서울	2	9	652,188	72,700	579,488	도비 추가지원
부산	1	4	145,400	72,700	72,700	
대구	1	5	245,400	72,700	172,700	도비 추가지원
인천	1	4	205,000	72,700	132,300	도비 추가지원
광주	1	8	375,000	72,700	302,300	도비 추가지원
대전	1	3	153,680	72,700	80,980	도비 추가지원
울산	1	4	245,000	72,700	172,300	도비 추가지원
세종	1	3	145,400	72,700	72,700	
경기	2	12	681,610	145,400	536,210	도비 추가지원
강원	1	4	221,400	72,700	148,700	도비 추가지원
충북	1	6	336,656	72,700	263,951	도비 추가지원
충남	1	4	145,400	72,700	72,700	
전북	1	3	145,400	72,700	72,700	
전남	1	3	145,400	72,700	72,700	
경북	1	3	145,400	72,700	72,700	
경남	1	4	292,417	72,700	219,717	도비 추가지원
제주	1	3	284,404	72,700	211,704	도비 추가지원

<장애인복지법>
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4>

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·운영 기준

1. 시설기준

가.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㎡ 규모 이상으로 거실, 상담실, 화장실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, 비상재해대비시설,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제41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조리실, 의무실, 집단활동실은 장애인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2. 인력기준

가. 배치기준: 시설장 1명,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5명

나. 시설장 및 생활지도원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(시설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)
- 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
- 3) 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·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
- 4)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3. 운영기준

가. 입소정원: 8명

나. 운영시간: 주 7일, 24시간 운영

다. 관리규정

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1) 시설의 운영방침
- 2) 직제·정원 및 직원 업무분장
- 3) 입소자의 처우요령
- 4) 입소·이용 규정 5) 입소자의 생활수칙
- 6)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내용
- 7) 그 밖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

4. 장부 등의 비치

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가. 관리에 관한 장부

- 1) 직원 관계철
- 2) 회의록철
- 3) 사업일지
- 4) 문서철
- 5) 문서 접수·발송대장
- 6) 차량 운행일지
- 7) 안전점검표

나. 사업에 관한 장부

- 1) 입소자 관계 서류(상담기록카드, 입소자 카드 등)
- 2)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
- 3)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(프로그램 운영일지 및 평가 관련 서류)

다. 재무·회계에 관한 장부

- 1) 총계정 원장 및 수입·지출 보조부
- 2)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
- 3) 예산서 및 결산서
- 4) 비품 출납대장
- 5) 비품 관리대장
- 6) 재산대장·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7) 시설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
- 8)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

〈사회복지사업법〉

-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 - 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〈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〉

-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 - 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- 2. 위탁계약기간
 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〈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〉

- 제8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〈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〉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 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-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) ①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.
- 제10조(재계약·재위탁) ①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 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